

#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상정
-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3. 15)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가. 제안이유

-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2009. 11. 28. 시행) 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없  음

##### 나. 반대토론

없  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553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출년월일 : 2010. 2.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2009. 11. 28. 시행) 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규정이 폐지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 첨 부: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0. 12. 06 조례 제1069호  
개정 1993. 08. 09 조례 제1238호  
개정 1994. 01. 08 조례 제1259호  
개정 1996. 07. 18 조례 제1433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63호  
개정 1999. 09. 08 조례 제1689호  
개정 2001. 04. 02 조례 제1820호  
전문개정 2008. 08. 11 조례 제2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구별로 설치하되,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원미구농지관리위원회
2. 부천시소사구농지관리위원회
3. 부천시오정구농지관리위원회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해당 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관한 확인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그 밖에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 위원의 정수) 구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인접한 2개 동부터 4개 동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선임)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영 제64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선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의 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가 승인이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

별표 2"의 농지임차료 상한이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별표 2"중 남구, 중구의 구분을 두지않고 이 조례 개정 당시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관할하는 동을 그 구의 관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농지관리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제5조 관련)

(단위: 명)

구분 구별	계	구 청 장 (위원장)	농민대표위원	농업 관련 기관 추천위원
원 미 구	10	1	8	1
			역곡1동 2 역곡2동 1 춘의동 3 약대동 2	농업협동조합 1
소 사 구	11	1	10	
			소사본1동 1 소사본3동 1 범박동 4 괴안동 1 역곡3동 2 송내1동 1	
오 정 구	14	1	11	2
			성곡동 2 원종1동 2 고강본동 1 고강1동 1 오정동 4 신흥동 1	농업협동조합 1 한국농촌공사 1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서

임차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경과 임대를 겸한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경농 대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구청장(직인)

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각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주소지거주기간	20 . . . ~ 20 . . . (년 월)			
	⑤ 영 농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⑥ 최 종 학 력	학교(졸업, 중퇴)			
	⑦ 주 요 경 력				
영 농 현 황	⑧ 소유농지 (단위: m <sup>2</sup> )				
	전	답	과수원	시설원예	계
	⑨ 임차(임대)농지 (단위: m <sup>2</sup> )				
	전	답	과 수 원	시설원예	계
	⑩ 주재배 작물 (단위: m <sup>2</sup> )				
	작 목 명	재 배 면 적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을 부천시 ○○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